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기에,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6.9.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오산시 주소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오산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마.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아.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4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83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8일

발의의원 : 이상복의원

찬성의원 : 김영희, 김명철,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기에,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6.9.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오산시 주소 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오산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마.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아.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현행조례(전문) :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오산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유료 광고비용에 준하는 금액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행정동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

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손해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오산시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오 산 시

60mm×90mm(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도로명주소법(시행 2021.6.9.)(법률 제17574호, 2020.1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사용·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⑥ 생략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 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⑥ 생략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 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 사항인 경우

⑦~⑫ 생략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및 시행(2021.6.9.)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 추진 중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 2021.1.28. ~ 3.9.)

제26조(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설치 등) ①~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국가지점번호의 관리 및 활용)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54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을 고지받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물주소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주소정보 산업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

-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
 -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 나. 실내 위치의 안내
 - 다. 사물인터넷의 활용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
 -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 나. 산업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 다. 민간부문이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지원
 -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나. 제73조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를 부여·정제·변경하는 산업의 지원
 7.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의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74조(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도로명(도로구간의 설정 및 기초번호의 부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3. 고지에 관한 사항(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지는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 법인

제75조(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건물등·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증표로 대신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조례]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54호
개정	2010년	4월 22일	조례 제1093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2월 21일	조례 제1140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년	4월 2일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03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2>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2]

제3조 삭제 <2010. 4. 22>

제2장 삭제 <2010. 4. 22>

제4조 삭제 <2010. 4. 22>

제5조 삭제 <2010. 4. 22>

제6조 삭제 <2010. 4. 22>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개정 2010. 4. 22>

제7조 삭제 <2010. 4. 22>

제8조 삭제 <2010. 4. 22>

제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제9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하며,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0. 4. 22]

제4장 삭제 <2010. 4. 22>

제10조 삭제 <2010. 4. 22>

제11조 삭제 <2010. 4. 22>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2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2>

[제목개정 2010. 4. 22]

제13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제목개정 2010. 4. 22]

제14조 삭제 <2010. 4. 22>

제15조 삭제 <2010. 4. 22>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개정 2010. 4. 22>

제1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4. 22, 2017. 9. 26>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 4. 22]

제1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제목개정 2010. 4. 22]

제19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개정 2010. 4. 22>

제20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22]

제21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③ 삭제 <2017. 9. 26>

제22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3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및 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제24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 <개정 2010. 4. 22>

제25조 삭제 <2010. 4. 22>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4. 22,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4. 4. 2, 2015. 6. 1,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1. 문화예술과장, 토지정보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식견이 높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4. 22, 2017. 9. 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제10장 도로명주소의 고지 <신설 2011. 2. 21>

제33조(고지방법)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21]

[중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11. 2. 21>]

제34조(실비지급)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21]

제3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 제33조에서 이동 <2011. 2.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가로명예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4. 22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민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1. 2. 21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공보담당관, 민원토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민원토지과장, 건설방재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㉒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2014. 4. 2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민원여권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⑳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㉑ 부터 ㉔ 까지 생략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㉔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2019. 9. 30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㉙ 부터 ㉚ 까지 생략